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3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공원 입장료 및 공원시설 이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(안 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등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(2) 입법예고(2019. 9. 25. ~ 10. 15.) 결과: 의견없음

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7119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부칙 제2조 중 “2019년 12월 31일”을 “2020년 12월 31일”로
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 < 제7119호, 2019. 5. 2.></p> <p>제2조(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 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) 제20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<u>2019년 12월 31</u> <u>일까지</u> 효력을 가진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 < 제7119호, 2019. 5. 2.></p> <p>제2조(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 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) ----- ----- <u>2020년</u> <u>12월 31일</u>-----.</p>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안 제20조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결제 할인을 부칙 2조에서 2020년 말까지 연장함에 따라 세외수입 감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

- 감면손실액 산출 = '19년 제로페이 이용료 1달 평균 감면액 × 12개월
(단위 : 천원)

구 분	'19. 5월~9월 제로페이 할인액	1달 평균 할인액	'20년 할인 예상액	비고
금 액	108,562	21,712	260,544	입장료는 '19년과 동일
서울식물원	68,097	13,619	163,428	
서울대공원	40,465	8,093	97,116	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 오승재 (02-2133-2025)